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행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886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의 장소 및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장소·시설·대상	처분대상	근거법령(처분근거)
가. 실내* 전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다. 관리의무(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 ~ 4호**

**4. 처분사유 : 인천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방역 강화 및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2. 5. 2.(월) 0시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

##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 나. 과태료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개정 '20.8.12, 시행 '20.10.13)

### 다.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 라.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sup>\*</sup>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여야 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sup>\*</sup>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단, ①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②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5. 2.(월)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 신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처분 관련 부서

- 행정명령 관련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 : 시, 군·구 담당 부서